

녹색제품 우선구매

☐ 관련 근거 :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

○ 녹색제품의 범위(법 제2조)
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(마크), 우수재활용(GR) 인증을 받은 제품

*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, ‘친환경상품’을 ‘녹색제품’으로 명칭 변경('11.4.5 개정)

○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 부여(법 제6조)

-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,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

* 안정적 공급 불가, 현저한 품질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

○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(법 제10조)

- 환경부장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, 업무평가 항목에 구매실적 반영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

☐ 주요 정의

- **녹색제품**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

☐ 적용대상

-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

☐ 구매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2016년	2017년
276	410